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1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윤준병·안호영·송옥주
문금주·허성무·이춘석
이학영·김성범·최혁진
이재관·김 윤·김의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한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u>

<신 설>

전에 폐업한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한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